##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6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서지영·곽규택·성일종

이헌승 · 김승수 · 이종배

정성국 • 박성민 • 박충권

박성훈 · 김도읍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 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 법률 제 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7조의 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 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둔다.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 계 구축
- 3.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 ③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 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 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1.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2. 제7조의3제2항의 삭제지원요청에 따른 삭제지원
- 3.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삭제지원
-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 ④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한다.

제24조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를 각각 "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를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을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통합지원센터 또는"을 "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또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훈련시설이"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u>가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가와 지방자치단체는-----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 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 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 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 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 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 <u>가에</u>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u>국가는</u>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④ (생 략)
- ⑤ <u>국가가</u> 제1항에 따라 촬영 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 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 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 다.
- ⑥ (생 략)

<신 설>

,
<u>.</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1.·2. (현행과 같음)
1. · 2. (한영의 끝급)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u> </u>
⑥ (현행과 같음)
세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는

등의 삭제지원 및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 3.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 물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 지 관련 연구 및 홍보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디지 털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 ③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 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및 디지 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 별자치도에 둔다.
- 1.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 한 상담
- 2. 제7조의3제2항의 삭제지원요 청에 따른 삭제지원
- 3.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삭제 지원
-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디지 털성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업무
- ④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 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수 없다.

- 1. ~ 4. (생략)
-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 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 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 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 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 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상담소·<u>보호시설 및 통</u> <u>합지원센터의</u> 평가) ① 여성가

<u>보호시</u>
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u>.</u>
1. ~ 4. (현행과 같음)
②보호시설, 통합지
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u>보호시설, 통합지원</u>
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u>원센터</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
보호시설, 통합지원센
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u>센터의 장</u>
제25조(상담소· <u>보호시설·통합</u>
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

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 저 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 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 조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저 지정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 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 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 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 <u>터의 장</u>이나 그 밖의 종사자 <u>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u>

<u> 자지원센터의</u> 평가) ①
보호시설
•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
죄피해자지원센터의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
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2
보호시설, 통합지원센
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
원센터의 <u>장</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 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 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 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 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 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 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 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u> 터의 장</u>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u> 장</u>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 , , , , , , ,
<u>-</u>
<u></u> 통
<u>통</u> 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
통 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 또는
통 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 또는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 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 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u>성폭력피해</u>
자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
<u>.</u>